##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[ ] 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임	일		처리기	간	1개월(2주)		
신청인	①선임인 [ ]해!	당 - 신고번호(	)	[	]비해당				
	사업장명		대표자		2	업종			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	_)	근로자 수						
	소재지								
	(전자우편주소:								
	전화번호		팩스번 3	<u></u>					
③구분	[ ] 제조 [	] 수입	[ ]	연구개	발용 [	]	비연구개발용		
4)제품명									
⑤제품 내 구성성분의 명칭・함 유량 및 신청 여부 등	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물질 해당 여부	명칭(CAS No.)	신청 여부	함유량	신청 여	부	건강·환경유해 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		
		1. [ ]	신청 [ ]비신청		[ ]신청 [ ]ㅂ	l신청			
		2. [ ]	신청 [ ]비신청		[ ]신청 [ ]ㅂ	l신청			
		3. [ ]	신청 [ ]비신청		[ ]신청 [ ]ㅂ	l신청			
		4. [ ]	신청 [ ]비신청		[ ]신청 [ ]ㅂ	l신청			
	- 제품 내 구성성분의 수: 종 -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수: 종 -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: 종								
⑥대체자 료	대체명칭					대체함유량			
	1.								
	2. 3.								
	<u>○</u> ※ 비공개를 신청하는 명칭 및 함유								
①제품의건 강• 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 험성 정보									
⑧기승인	※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지	h료의 승인번호 및 승 <sup>6</sup>	인기간 기재(연	현장승인 ·	신청서인 경	우만 :	기재)		
정보									
	过보건법」 제112조제1항 및 같 ·인을 신청합니다.	은 법 시행규칙 제	161조에 따려	가 <u>물</u> 질인	<u> </u>	료 비			
		신청인				년	변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
한국산업	안전보건공단 이사장	귀하					(		

	1.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					
	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					
	는 자료(연구개발용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)					
	2.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					
	3.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 정보. 다만, 해당 정					
	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거나,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	수수료				
제출 서류	출처와 함께 적혀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					
	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	고용노동부				
	한 자료나 서류. 다만,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혀 있는 경우 제2호의	장관이 정하는				
	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,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와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					
	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					
	5.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					
	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				
담당공무원	1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1				
담당중두편 확인사항	1. 사업사등속등병(개인의 경우인 해방합니다)   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		
	- 120. 1 1000 KHZ 1 012 - 108 1-11					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작성방법

- 1.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
- 1.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.
- 2. ③란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중 하나를,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.
- 3.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- 4. ⑤란은 제품 내 구성성분에 대한 명칭(CAS No. 포함) 및 함유량 정보를 기재합니다.
  - 구성성분별로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표시한 후 이에 해당하는 구성성분 중 비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명칭 및 함유량을 표시합니다.(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)
  -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성성분별로 건강·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.
  - 제품 내 구성성분 및 비공개를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.(하나의 구성성분에 대해 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여도 1건으로 기재)
- 5. ⑥란은 ⑤란에서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승인받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합니다.
- 6. ⑦란은 화학제품에 대한 건강·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7. ⑧란은 연장승인 신청서에 한하여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을 기재합니다.

